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4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 강원·경남·전남·제주,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였다.

<선정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 의료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시의료원 성가롤로병원 순천의료원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정 지역별 주요 지원내용>

- ▶ (강원)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연계(연구활동 장려금, 의대생 실습책임 활동수당 등) 월 100만 원~200만 원 지역상품권, 리조트 등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
- ▶ (경남)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월 100만 원), 전입가족 환영지원금(1인 200만 원, 최대 800만 원), 자녀 양육지원금(1인 월 50만 원, 6개월이상 거주시 지급) 등
- ▶ (전남) 교육부 RISE 연계(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 활용 주거지원, 연수·연구비 지원), 생활 인프라(문화·여가시설 할인 등) 지원 등
- ▶ (제주) 도지사-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토대로 지역필수의사 인원 배치 등 사업 기획, 의료기관별 숙소지원 및 급여 상향 책정, 근무시간 조정 등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하면서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사업 개요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02-2680)
		담당자	사무관	임희주 (044-202-2681)



□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지방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한 및 건강수준의 격차 유발한다는 문제 지속 제기
- (경과) 의료개혁 4대과제(‘24.2.1), 1차 실행방안(‘24.8.30),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24.9.10) 등의 주요 과제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 **사업 내용**

- (사업목적)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의료 역량·신뢰 강화
- (지원예산) '25년 1,352백만원
- (지원근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1조 등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 (사업방식) 공모를 통해 4개 시·도 선정*
 - * (선정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지역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한 8개 과목* 전문의(4개 시도, 총 96명)
 -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지원내용) 지역 근무 수당(월 4백만원), 정주여건(지자체) 지원
 - * (예시) 주거, 교통편의 제공, 연수, 연구활동지원, 여가문화 지원, 자녀 교육 등

□ **개 요**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핵심 인적자원 집약체인 대학이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발전을 이끄는 체계를 의미
-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 RISE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역할 이행
 - (지역 및 대학) 지자체는 지역혁신 주체와 지역의 발전전략을 설계 하고, 대학은 지역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기술 개발 등 진행
 - * 지역 RISE 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장 소속으로 교육계·학계·경제계·산업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20인 내외 구성/ 지역 발전전략을 담은 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의결
 - (중앙) RISE 지원전략, 규제 개선, 성과관리, 예산배분, 컨설팅 등 전국에 적용될 RISE 주요 추진사항 등 관리
 - * 중앙 RISE 위원회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처 정부위원·교육계·학계·경제계·산업계·언론계 등 40인 내외 구성/ RISE 지원전략 및 관계법령 제·개정 등 심의·의결

□ **RISE 체계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연계**

-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24.9.1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관련 사업 추진

< 참고: 의대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투자방안 중 필수의료인력 양성 관련내용 >

- (추진체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5.~)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료 지원을 위한 과제·사업 기획 및 집행
- (지역 정주 의료인력 확보^{복지부}) 자율적 선택에 따라 지역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정부)·지자체와 계약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지역수당 등 지원

- (교육부) RISE 기본계획(‘25~’29)에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하여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관련 과제 반영
- (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RISE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하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지역 내 의료인력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확보 방안 마련